노후 대비와 가계저축행위

안 종 범*·전 승 훈**

본 논문은 가구의 저축이 노후소득 보장방안으로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저축하는 가계의 저축행위 및 노후대비라는 저축목적이 가계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 가계의 저축 목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가구의 저축이 노후대비 수단으로 작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 가구주의 높은 교육수준, 가구주의 취업상태, 가계소득과 주거상태의 안정성 등이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노동시장이 안정되어 가구주의 고용상태가 안정이 되고, 이에 따라 가계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그리고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주거상태가 개선될 경우 가계가 노후대비를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후대비를 위한 사적인 노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정책, 가구 소득 증대 정책, 주택정책 등이 동시에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사적저축은 공적인 연금과 함께 은퇴 후 적정 소비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수단이다. 즉 은퇴 후 적정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영역에서 연금과 사적인 영역에서의 저축이 적절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안종범·전승훈(2005)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다수 인구에서 사적저축과 공적연금을 포함한 자산축적수준이 은퇴 후 필요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함께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은퇴 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면서 은퇴 후 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 사적저축과 공적연금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 수년 사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연금재정안정화 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적용제외자나 납부예외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제도 도입 등의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사적저축의 노후소득보장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cban@skku.edu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jsh1105@nabo.go.kr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구의 저축이 노후소득 보장방안으로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사적저축이 노후대비 수단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본 논문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를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하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로 구분한 후 각각의 특징을 분석한다. 둘째,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저축하는 가계의 저축행위 및 노후대비라는 저축목적이 가계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본 논문에서는 가계의 저축 목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한다. 즉 어떠한 가구가 지속적으로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하는지, 저축목적이 노후대비에서 노후대비 이외의 목적으로 바뀌는 가구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가구가 저축목적을 노후대비 이외의 목적에서 노후대비로 변경하는지를 검토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노후대비를 위한 가계저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가구의 저축동기와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노후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저축동기로 작용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본 후, 논문의 연구주제를 제시한다. 제 III장에서는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하는 가구의 특징 및 노후대비가 가계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 IV장에서는 가계 저축목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마지막 제 V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및 연구주제

1. 선행연구

여기서는 저축의 목적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노후대비가 가계저축의 중요한 동기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정지만(2004)은 저축 동기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크게 생애주기가설, 유증동기가설(=유산상속동기, bequest motive), 예비적 동기, 그리고 고가품구입 동기 등 네 가지로 소개하여 정리하고 있다.[1] 생애주기가설은 Modigliani(1949)의 소비이론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 개인은 자신의 일생동안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즉 개인들은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 안정된 소비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시기에 저축을 하고, 소득이 부족한 노후시기에는 노동시기의 저축을 이용하여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이다.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개인은 노동시기의 저축을 사망시기까지 모두 소비하여 아무런 부(wealth)도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상당수의 개인이 사망시점에 상당한 수준의 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제시된 저축 동기가 유산상속동기이다. 즉, 후손에게 유산을 남기기 위해 저축을 한다는 것이다. 유산을 상속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1) 선행연구 중 저축동기에 관한 내용은 정지만(2004)의 제II장의 내용을 상당부분 참고하였다.

두 가지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Barro(1974), Becker and Tomes(1979) 등은 개인이 자신의 소비뿐만 아니라 후손의 소비에서도 만족을 느끼는 효용극대화 문제를 가정하고 있다. 반면, Bernheim, Shieifer, and Summers(1985), Kotlikoff and Spivak(1981), Horioka(1984), Hayashi(1986) 등은 자신의 노후생활을 보장받으려는 이기심이 유산을 남기게 된다고 주장한다. 유산을 대가로 자식을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은 사람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저축을 한다는 주장이다. 장차 발생할지도 모르는 실직, 질병 및 사망, 자연재해 등의 재난에 대비하여 일정한 자산을 저축의 형태로 보유한다는 것이다. Ando and Modigliani(1963), Modigliani(1989) 등은 생애주기가설에 추가하여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유산을 남기게 되는 것은 상당부분 예비적 동기에 의해 저축된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사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가품구입 동기에 의한 저축이란 사람들이 미래에 집이나 자동차 등과 같이 고가품을 구입하기 위해 저축을 한다는 것이다. 정지만(2004)은 주택금융이나 소비자 금융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을수록 고가품 구입을 위한 저축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제도가 발달된 경우, 고가 소비재를 자금을 차입해서 구입한 후 미래에 이를 갚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의 필요성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네 가지 가설은 노후대비가 중요한 저축동기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특히 생애주기가설, 유산상속동기, 예비적 동기 등은 저축의 중요한 목적이 노후대비임을 시사하고 있다. 생애효용극대화모형에 입각하여 은퇴 후 소비를 위한 저축을 상정하는 생애주기가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유산상속동기에 의한 저축 역시 이기심을 논의에 포함시킬 경우 노후대비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2]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중요한 저축동기이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은퇴 기간의 증가, 은퇴 후 소비의 예측치 못한 감소, 노후의 건강문제 등 노후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예비적 동기 역시 노후 대비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주제

저축동기에 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노후대비는 가계저축의 중요한 동기이다. 그런데, 이를 한국의 가계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실증적인 검토는 그리 많지 않다. 노인가계의 경제구조나 은퇴 준비에 대한 국내 연구는 이희숙(1995), 김순미(1998), 성지미·이윤정(2001), 양세정·성영애(2001), 임경자(2002), 배문조·전귀연(2004), 신종욱·이정호(2004) 등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사적인 저축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저축의 목적을 구분한 후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하는 가구의 특징을 검토한 후, 노후대비를 위한 사적저축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저축이 노후대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노

2) 유산상속을 위한 저축액은 직접적으로 노후 소비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를 부양하기 위한 자녀의 소비와 상당부문 상쇄될 것이다.

후대비 수단으로 가계저축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연구한다.

연구주제 1: 가계 저축 목적에 대한 검토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가계저축 실태 및 가계저축의 목적을 검토한다.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하는 가계의 비중,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하는 가계와 노후 대비 이외의 목적을 위해 저축하는 가계의 특징 비교 등을 실시한다. 또한 이항선택 모형(binary choice model) 추정을 통해 어떠한 특성을 갖는 가구가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할 가능성이 높은지 검토한다.

연구주제 2: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하는 가구의 가계저축행위 분석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저축하는 가계의 저축률, 저축액 등 가계 저축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가계저축함수를 추정한다. 노후대비 가구의 가계저축함수 추정에 사용되는 표본은 전체 가구를 대표하는 표본이 아니며,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저축하는 가구만을 추출한 표본(Selected sample)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본을 사용하여 추정된 결과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갖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sample selection model)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2단계 추정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가계의 저축행위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편의의 해석을 통해 노후대비 저축목적이 가계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주제 3: 가계저축 목적 변화에 관한 검토

가계의 저축목적은 가계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가구가 지속적으로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하는지, 저축목적이 노후대비에서 노후대비 이외의 목적으로 바뀌는 가구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가구가 저축목적을 노후대비 이외의 목적에서 노후대비로 변경하는지를 검토한다.

III. 노후대비와 가계저축행위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를 사용한다. 「한국노동패널」은 1998년 시작되어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등 노인들의 저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 저축목적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4~7차년도 자료를 사용한다. 이는 조사

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2001~2004년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개인 및 가구특성은 조사 당해연도의 특징이 조사되지만, 소득 및 소비는 전년도의 소득과 소비가 조사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3] 따라서 개인 및 가구특성 조사년도와 소득 및 소비조사년도를 일치시킬 경우 실제 사용되는 자료는 2001~2003년 자료가 된다.

<표 1> 「한국노동패널」자료의 조사항목별 조사대상연도

조사차수	조사년도	소득 및 소비 연도	개인 및 가구 특성
1	1998	조사시점 이전 1년	1998
2	1999	1998	1999
3	2000	1999	2000
4	2001	2000	2001
5	2002	2001	2002
6	2003	2002	2003
7	2004	2003	2004

본 논문에서는 저축, 소득 및 소비 조사년도와 개인 및 가구특성 조사년도를 일치시킨 후, 이들 자료 중 2001~2003년 기간 모두 조사에 응한 가구를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총 표본의 수는 연도별로 2831가구이다.

<표 2>는 연도별로 표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2001년 기준으로 50.55세이며, 가구주가 남성인 가구의 비중은 85.76%에 달한다. 가구주의 평균 교육연수는 10.13년이며, 약 80%가구주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3년 모두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7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실업자의 비중은 2001년 1.73%, 2002년 1.27%, 그리고 2003년 1.59%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비경제활동인구인 가구의 비중은 2001년 21.12%, 2002년 21.26%, 2003년 23.14%였다.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자가소유가구의 비중이 65% 가량이고, 평균가구원수는 2001년 3.62명에서 2002년에는 3.47명, 2003년에는 3.44명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8세미만 가구원의 수는 0.8명 내외로 조사되었다.

가구의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월평균경상소득은 2001년 211.72만원에서 2002년에는 211.92만원, 2003년에는 223.30만원으로 조금씩 증가하였으며, 월평균생활비는 2001년 134.42만원에서 2002년 144.05만원, 2003년 150.49만원으로 월평균 경상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순금융자산은 2001년 -78.61만원에서 2002년 -367.29만원, 2003년 -789.74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01~2003년 기간동안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구주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구의 비중은 2001년 56.31%, 2002년 55.46%, 그리고 2003년56.13%이다.

3) 1차년도의 경우에는 조사시점으로부터 1년 전의 소득 및 소비가 조사되었다.

<표 2> 연도 별 가구주 및 가구 특성

	2001	2002	2003
가구수	2831	2831	2831
가구주 연령	50.55	51.55	52.55
가구주 성별 (1=남성)	0.8576	0.8576	0.8576
가구주 교육년수	10.13	10.13	10.14
가구주 배우자 유무 (유=1)	0.8131	0.8075	0.7997
경활상태 (임금 =1)	0.4627	0.4698	0.4532
(비임금 =1)	0.3087	0.3048	0.2995
(실업 =1)	0.0173	0.0127	0.0159
(비경활 =1)	0.2112	0.2126	0.2314
주거상태 (자가=1)	0.6443	0.6556	0.6761
가구원 수	3.62	3.47	3.44
18세 미만 가구원 수	0.87	0.81	0.77
월평균 경상소득(만원)	211.72	211.92	223.30
월평균 생활비(만원)	134.42	144.05	150.49
순금융자산(만원)	-78.61	-367.29	-789.74
국민연금가입여부 (가입=1)	0.5631	0.5546	0.5613

2. 가계저축행위에 대한 기초 분석

가. 가계저축수단과 저축목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저축의 개념은 경상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가계저축은 가계 순자산스톡의 변화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는 비금융자산의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자산의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과 소비의 차이를 총저축이라고 가정하여 사용한다. 가구 소득과 소비의 차이는 적금, 개인연금, 저축성보험 등 저축수단을 통한 저축, 부채상환,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구입 등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순자산스톡의 변화와 거의 일치할 것이다.

<표 2>는 연도별로 양의 저축을 하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비교한 것이다. 총저축이 양인 가구는 2001년 2187가구, 2002년 2163가구, 2003년 2042가구로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1~2003년 기간 중 가구 소비증가율이 가구 소득증가율보다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저축수단별로 살펴보면 적금에 가입한 가구의 수는 2001년 1139가구, 2002년 1004가구, 2003년 947가구이며, 개인연금 가입가구는 2001년 568가구, 2002년 355가구, 2003년 348가구이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2001년 1694가구, 2002년 1638가구, 2003년 1635가구이며,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2001년 419가구, 2002년 292가구, 2003년 230가구이다. 이상의 결과는 대부분의 가계가 저축수단 중 저축성보험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총저축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저축수단 역시 저축성보험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4) 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한 조사항목은 존재한다.

<표 3> 저축 및 저축수단 가입 가구 수

	2001		2002		2003	
	양의 저축	음의 저축	양의 저축	음의 저축	양의 저축	음의 저축
총저축	2178 (76.93)	653 (23.07)	2163 (76.40)	668 (23.60)	2042 (72.13)	789 (27.87)
적금	1139 (40.23)	1692 (59.77)	1004 (35.46)	1827 (64.54)	947 (33.45)	1884 (66.55)
개인연금	568 (20.06)	2263 (79.94)	355 (12.54)	2476 (87.46)	348 (12.29)	2483 (87.71)
저축성보험	1694 (59.84)	1137 (40.16)	1638 (57.86)	1193 (42.14)	1635 (57.75)	1196 (42.25)
보장성보험	419 (14.80)	2412 (85.20)	292 (10.31)	2539 (89.69)	230 (8.12)	2601 (91.88)
계	121 (4.27)	2710 (95.73)	110 (3.89)	2721 (96.11)	101 (3.57)	2730 (96.43)

주: ( )는 분석에 사용된 2831가구 대비 비중을 의미함.

<표 4>는 연도별 월평균 저축액을 보여주고 있다. 총저축액은 2001년 77.30만원에서 2002년 67.87만원으로 감소한 후 2003년에는 72.81만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2003년에 소폭 상승하였지만, 월평균 경상소득이 2002년 211.92원에서 223.3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총저축액이 증가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저축수단별로 살펴보면 적금 납입액은 2001년 21.88만원에서 2002년 18.23만원으로 감소한 후 2003년에는 20.66만원으로 증가하였다. 개인연금 역시 2001년 2.99만원에서 2002년 2.34만원으로 감소한 후 2003년에는 2.5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저축성보험은 2001년 10.37만원에서 2002년에는 11.88만원으로, 2003년에는 12.54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보장성 보험 납입액과 계 납입액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앞서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의 저축을 하는 가구가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저축 가구 당 적금, 개인연금, 저축성보험 등의 납입금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저축을 할 수 없는 가구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축을 유지할 수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저축액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연도별 월평균 저축액 비교

(단위: 만원)

	2001	2002	2003
가구수	2831	2831	2831
총저축액	77.30	67.87	72.81
적금 납입액	21.88	18.23	20.66
개인연금 납입액	2.99	2.34	2.50
저축성보험 납입액	10.37	11.88	12.54
보장성보험 납입액	3.38	2.62	1.70
계 납입액	1.95	1.85	1.69

<표 5>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연도별로 저축목적을 구분한 것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가계의 저축목적에 대해 동일한 질문을 두 번 하고 있으며, <표 5>는 중복응답의 결과이다. 2001~2003년 공히 가계의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목적은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 '노후생활 대비', '자녀교육비', '주택마련', '결혼/상제비'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가구 중 47.26%에 해당하는 1338가구가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여 저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6.91%에 해당하는 1328가구가 '노후생활대비'라고 응답하였다. '자녀교육비'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30.10%에 해당하는 852가구였으며,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저축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2.33%인 349가구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저축목적 분류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는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저축 동기 중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이 의미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노후생활대비'는 생애주기가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가구가 노년시기를 대비하여 저축한다는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은 고가품 소비를 위한 저축동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표 5>의 결과는 예비적 동기와 노후대비, 그리고 고가품 소비 동기 등이 복합적으로 가계의 저축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유산상속을 위한 동기에 의한 저축은 조사항목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웠다.[5)]

한편 저축목적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저축가구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여 저축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거의 줄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노후생활대비'를 목적으로 저축하는 가구의 비중은 2001년 46.91%에서 2002년 41.43%, 그리고 2003년에는 34.83%로 감소하였다. '자녀교육비'를 목적으로 저축하는 가구비중역시 2001년 30.10%에서 2002년 28.40%, 2003년 19.15%로 감소하였으며, '주택마련'목적 저축가구는 2001년 12.33%, 2002년 10.95%, 2003년 8.87%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의 경우 저축을 감소시킬 때 '노후대비', '자녀교육비' 등을 목적으로 한 저축을 먼저 줄이고,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은 최대한 유지하려고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5> 연도별 가구의 저축 목적

	2001		2002		2003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자녀 교육비	852	30.10	804	28.40	542	19.15
주택 마련	349	12.33	310	10.95	251	8.87
자동차/ 가구/ 전자제품 등 내구제 구입	26	0.92	14	0.49	8	0.28
결혼/ 상제비	328	11.59	340	12.01	277	9.78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	1338	47.26	1273	44.97	1269	44.83
노후 생활 대비	1328	46.91	1173	41.43	986	34.83
여행 및 여가 생활	51	1.80	58	2.05	48	1.70
사업 자금 마련	50	1.77	65	2.30	34	1.20
차입금 상환 목적	84	2.97	90	3.18	37	1.31

5) 유산상속을 위한 저축동기가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현재의 설문조사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망시점의 저축존재 등 다른 방식으로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가계저축수단과 저축목적에 대해 살펴본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 우선 노후대비는 가계의 중요한 저축목적이다. 그러나 소득수주의 감소, 부채증가 등을 위해 저축을 감소시킬 경우, 가계는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을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저축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이를 제거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노후대비와 가계저축

<표 6>은 표본 가구를 저축목적에 따라 노후대비 목적 저축가구와 기타 목적 저축가구로 구분한 후 각 집단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하는 가구와 노후대비 이외의 목적으로 저축하는 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2001년에는 50.77세와 50.34세로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2002년에는 50.90세와 52.00세, 2003년에는 50.27세와 53.76세로 노후대비 이외의 목적으로 저축하는 가구주의 가구주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가구주의 교육연수는 저축목적이 노후대비인 가구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저축목적이 노후대비인 가구의 경우 2001~2003년 기간 동안 10.57년, 10.78년, 11.21년으로 조금씩 높아지는데 비해 저축목적이 노후대비 이외인 가구의 경우 9.74년, 9.66년, 9.57년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주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저축하는 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비중이 85.09%, 86.39%, 87.73%로 증가하는데 비해, 저축목적이 노후대비 이외인 가구의 경우 77.98%, 76.78%, 75.83%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대비 이외의 목적의 가구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높아지고, 교육연수가 낮아지고, 배우자가 없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연수가 낮을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없을수록 저축목적을 노후대비에서 노후대비 이외의 것으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낮고,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있을수록 저축목적을 노후대비 이외의 것에서 노후대비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등 취업자의 비중이 노후대비 목적 저축가구의 경우 80%를 넘어서는데 비해, 기타목적 저축가구의 경우 7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주가 비경제활동상태에 놓여있는 가구의 경우 노후대비 목적 저축가구의 경우 18.45%, 14.83%, 13.29%로 줄어드는데 비해, 기타목적 저축가구의 경우 23.49%, 25.81%, 28.4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취업상태에 놓여있는 가구가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구주가 비경제활동상태에 놓여 있는 가구주의 경우 저축목적을 노후대비 이외의 것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가구 특성으로 주거상태를 비교해 보면 노후대비 목적 저축가구에서 자가소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평균 가구원수는 노후대비 목적 가구에서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8세 미만 가구원수는 2001년과 2002년에는 기타목적 저축 가구가 많았지만, 2003년에는 노후대비 목적 저축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월평균 경상소득과 월평균 생활비는 노후대비 목적 저축 가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소비의 증가율 역시 노후대비 목적 저축 가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순금융자산은 노후대비 목적 저축 가구가 기타목적 저축가구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1~2003년 기간에 두 집단 모두 순금융자산액이 하락하였으며, 2003년에는 두 집단 모두 평균적으로 볼 때 순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살펴보면 노후대비 목적 저축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대비 목적 저축 가구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비중이 61.45%, 64.11%, 67.5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타목적 저축 가구는 51.73%, 49.34%, 50.00%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저축목적 별 가구주 및 가구 특성

	2001		2002		2003	
	노후대비	기타	노후대비	기타	노후대비	기타
가구수	1328	1503	1173	1658	986	1845
가구주 연령	50.77	50.34	50.90	52.00	50.27	53.76
가구주 성별	0.8855	0.8330	0.8977	0.8293	0.9158	0.8266
가구주 교육년수	10.57	9.74	10.78	9.66	11.21	9.57
가구주 배우자 유무 (유=1)	0.8509	0.7798	0.8636	0.7678	0.8773	0.7583
경활상태 (임금 =1)	0.4759	0.4511	0.5081	0.4427	0.5314	0.4114
(비임금 =1)	0.3321	0.2881	0.3325	0.2853	0.3154	0.2911
(실업 =1)	0.0075	0.0259	0.0111	0.0139	0.0203	0.0136
(비경활 =1)	0.1845	0.2349	0.1483	0.2581	0.1329	0.2840
주거상태 (자가=1)	0.7274	0.5709	0.7204	0.6098	0.7546	0.6341
가구원 수	3.62	3.61	3.55	3.42	3.66	3.33
18세 미만 가구원 수	0.81	0.92	0.80	0.82	0.85	0.72
월평균 경상소득(만원)	241.51	185.41	253.38	182.59	281.19	192.37
월평균 생활비(만원)	144.49	125.53	166.13	128.43	179.39	135.04
순금융자산(만원)	515.69	-603.72	5.37	-630.94	-741.38	-815.58
국민연금가입여부 (가입=1)	0.6145	0.5176	0.6411	0.4934	0.6755	0.5000

2001년 기준으로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저축을 하는 가구 중 적금에 가입해 있는 가구의 수는 600가구로,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저축을 하는 가구 중 45.18%가 적금에 가입하였다. 반면 노후대비 이외의 목적으로 저축을 하는 가구의 경우 539가구, 35.86%가 적금에 가입하였다. 개인연금의 경우 노후대비 목적 저축가구는 25.98%가 기타목적 저축가구는 14.84%가 가입하였으며, 저축성보험은 노후대비 목적 저축가구의 65.44%가 기타목적 저축가구는 54.89%가 가입하였다. 보장성보험은 노후대비 목적 저축가구의 17.39%가 그리고 기타목적 가구의 12.51%가 가입하였으며, 계는 노후대비 목적 저축가구의 4.44%가, 그리고 기타목적 저축가구의 4.13%가 가입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모든 저축수단에 있어 노후대비 목적 저축가구의 저축수단 가입률이 기타목적 저축가구의 저축수단 가입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구의 경우 한 가구가 가입하는 저축수단이 기타목적 가구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한편 저축목적별로 선호하는 저축수단

을 살펴보면 노후수단을 살펴보면 노후대비 목적 저축가구와 기타목적 저축가구 모두 저축성보험과 적금 순서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노후대비 목적 저축가구는 개인연금을 보장성보험보다 선호하는데 비해, 기타 목적 저축가구는 개인연금과 보장성보험을 거의 무차별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저축액 및 저축수단별 월평균 납입액은 노후대비 목적 저축가구가 기타목적 저축가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노후를 대비하는 가구의 경우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저축할 수 있다. 둘째, 노후를 대비하는 가구의 경우 현재소비보다 미래소비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저축을 증가시킨다.

<표 7> 저축목적과 저축가구수 및 저축납입액

		2001		2002		2003	
		노후대비	기타목적	노후대비	기타목적	노후대비	기타목적
가구 수		1328	1503	1173	1658	986	1845
총저축액(만원)		97.02	59.88	87.25	54.16	101.80	57.32
적금	가구수	600	539	503	501	440	507
	비중	45.18	35.86	42.88	30.22	44.62	27.48
	월평균납입액(만원)	25.64	18.55	24.14	14.05	27.69	16.90
개인연금	가구수	345	223	213	142	216	132
	비중	25.98	14.84	18.16	8.56	21.91	7.15
	월평균납입액(만원)	4.08	2.03	3.48	1.53	4.70	1.33
저축성보험	가구수	869	825	789	849	743	892
	비중	65.44	54.89	67.26	51.21	75.35	48.35
	월평균납입액(만원)	11.94	8.98	15.21	9.52	17.66	9.80
보장성보험	가구수	231	188	136	156	118	112
	비중	17.39	12.51	11.59	9.41	11.97	6.07
	월평균납입액(만원)	4.27	2.59	3.36	2.09	2.99	1.01
계	가구수	59	62	50	60	46	55
	비중	4.44	4.13	4.26	3.62	4.67	2.98
	월평균납입액(만원)	2.17	1.77	2.31	1.52	2.54	1.24

주 : 비중은 노후대비 목적 저축 가구 수 대비 비중 혹은 기타목적 저축 가구 수 대비 비중임.

3. 가계저축 목적에 대한 이항프로빗분석

가. 추정방법 및 주요 변수

어떠한 가구가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저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하기 위해 저축목적이 노후대비인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구분한 후 이항프로빗분석(binary probi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때 연도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2001~2003년 기간 동안의 패널자료를 구축한 후 패널자료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연도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일반적인 프로빗 분

석 모형이 사용되었으며, 패널프로빗 추정방법으로는오차항이 확률분포라는 가정 하의 프로빗 모형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6)]

이항프로빗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저축목적이다. 노후대비가 저축목적인 가구는 1의 값을 그 외 가구는 0의 값을 갖게 된다. 설명변수로는 가구주특징, 가구특징, 저축관련 변수 등이 사용되었다. 가구주 특징으로는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자승, 가구주성별, 가구주 교육연수, 배우자유무, 경제활동상태 더미(임금근로자 더미, 비임금근로자 더미)가 사용되었고, 가구특징변수로는 18세미만 가구원 수, 주거상태에 관한 더미, 경상소득, 월평균 생활비, 순금융자산 등이 사용되었다.

나. 추정결과

<표 8>은 저축목적에 대한 이항선택모형에 대한 프로빗추정 결과이다. 제 1열의 변수명에 이어 2~3열은 2001~2003년 기간 동안 각 연도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고, 5열은 패널자료와 Butler and Moffitt(1982)의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추정결과 네 가지 경우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자승, 주거상태, 경상소득, 국민연금가입여부이다. 가구주 연령은 모든 경우에서 양의 부호를 갖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연령자승은 모든 경우에 음의 부호를 갖고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일정시기까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저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일정 연령 대를 넘어서면서부터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저축하게 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가소유여부와 경상소득, 국민연금가입여부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가를 소유한 가구일수록, 월평균경상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일수록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저축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가구주 교육연수, 가구주가 비임금근로자 더미, 그리고 순자산은 네 번의 추정 중 세 번에 걸쳐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세 미만 가구원 수는 2001년, 2002년, 패널자료 등 세 번에 걸쳐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가구주가 미취업자인 경우 보다는 비임금근로자인 경우에, 그리고 순자산이 높을수록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저축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18세 미만 가구원 수가 높을수록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저축하게 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 가구주 임금근로자 더미, 월평균생활비 등은 네 번의 경우 중 두 번에 걸쳐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가 미취업자인 경우 보다는 임금근로자인 경우에, 그리고 월평균생활비가 많은 경우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저축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6) 오차항이 확률변수라는 가정 하의 패널이항프로빗모형 추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Burtler and Moffitt(1982), Green(1995), Green(200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표 8> 저축목적(노후대비=1)에 대한 이항선택모형 추정결과

	2001년	2002년	2003년	패널분석
상수항	-2.36700 ***	-2.85679 ***	-3.48181 ***	-2.97769 ***
	(0.48215)	(0.52893)	(0.59486)	(0.34789)
가구주 연령	0.05852 ***	0.06998 ***	0.09312 ***	0.07578 ***
	(0.01771)	(0.01914)	(0.02153)	(0.01245)
가구주 연령자승	-0.00054 ***	-0.00062 ***	-0.00091 ***	-0.00072 ***
	(0.00016)	(0.00018)	(0.00020)	(0.00011)
가구주성별(1=남성)	-0.10635	-0.09601	-0.06978	-0.10081
	(0.11661)	(0.12508)	(0.13390)	(0.08041)
가구주 교육년수	0.02634 ***	0.01209	0.01416 *	0.02043 ***
	(0.00783)	(0.00799)	(0.00832)	(0.00519)
배우자 유무	0.21363 **	0.18079	0.12179	0.23136 ***
	(0.10528)	(0.11185)	(0.11739)	(0.07118)
경활상태(1=임금근로자)	0.12341	0.17482 **	0.13835	0.20023 ***
	(0.08327)	(0.08645)	(0.08777)	(0.05353)
경활상태(1=비임금근로자)	0.18053 **	0.17527 **	0.06066	0.17812 ***
	(0.08496)	(0.08898)	(0.09020)	(0.05360)
18세 미만 가구원 수	-0.12683 ***	-0.11246 ***	-0.00704	-0.08889 ***
	(0.03501)	(0.03656)	(0.03700)	(0.02358)
주거상태 (1=자가)	0.38610 ***	0.22850 ***	0.30129 ***	0.31339 ***
	(0.05864)	(0.05989)	(0.06304)	(0.03957)
경상소득	0.00040 ***	0.00046 **	0.00037 ***	0.00042 ***
	(0.00015)	(0.00019)	(0.00014)	(0.00008)
월평균생활비	0.00005	0.00108 **	0.00097 **	0.00037
	(0.00036)	(0.00043)	(0.00040)	(0.00023)
순자산	0.00001 ***	0.00001 **	0.00000	0.00001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국민연금가입여부	0.12166 **	0.24265 ***	0.16791 **	0.15890 ***
	0.06363	(0.06389)	(0.06626)	(0.03946)
rho				0.21712 ***
				(0.01952)
Log Likelihood	-1644.81	-1616.45	-1534.43	-5451.67

주: ( )는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4. 노후대비와 가계저축행위의 상호연관성

가. 추정방법 및 변수

이번 절에서는 노후대비 가구의 가계저축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가계저축함수를 추정한다. 그런데 가계저축함수 추정에 사용되는 표본은 무작위적으로 추출된 표본이 아니며, 가계저축목적이 노후대비인 경우에 한하여 나타나는 표본이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방법은 Heckman(1976, 1979)에 의해 제시된 2단계 표본선택모형(Sample Selection Model) 추정이다. Heckman의 추정방법에서 선택된 표본의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
\begin{aligned}
E[y_i \mid x_i,\ in\ sample] &= E[y_i \mid x_i,\ z=1] \\
&= E[y_i \mid x_i, \alpha' w_i + u_i > 0] \\
&= \beta' x_i + E[\varepsilon_i \mid u_i > -\alpha' w_i] \\
&= \beta' x_i + (\rho\sigma_\varepsilon\sigma_u)(\phi(-\alpha' w_i)/(1-\Phi(-\alpha' w_i))) \\
&= \beta' x_i + (\rho\sigma_\varepsilon\sigma_u)(\phi(\alpha' w_i)/(\Phi(\alpha' w_i))
\end{aligned}
$$

그런데 위의 식에서 σ_u는 별도로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sigma_u = 1$로 정규화를 시킨다. 그러면 위의 식은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다.

$$
\begin{aligned}
E[y_i \mid x_i,\ in\ sample] &= \beta' x_i + (\rho\sigma_\varepsilon)\lambda_i \\
&= \beta' x_i + \Theta\lambda_i
\end{aligned}
$$

Heckman의 2단계 모형에서는 위의 식을 추정하기 위해 1단계에서는 z에 대해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여 α를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 $\lambda = \phi(\alpha' w)/\Phi(\alpha' w)$를 계산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y를 x와 λ에 대해 회귀분석하여 β와 Θ를 추정한다.

Heckman 모형에서 2단계에서 추정되는 λ의 추정계수인 Θ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유의성을 검토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1단계 추정이 2단계 추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Heckman의 추정방법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노후대비라는 저축목적이 가구 저축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본 분석의 1단계는 저축목적에 관한 프로빗 추정이다. 1단계 추정 모형 및 추정결과는 3절의 연도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가구 저축목적에 관한 프로빗모형 추정결과로 이미 소개가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2단계 가계저축함수 추정결과만을 보고한다. 2단계 가계저축함수의 종속변수는 가구 총저축액이다. 설명변수는 가구주특징 함수로 가구주연령, 가구주 연령자승, 가구주성별, 가구주 교육연수, 배우자유무, 경제활동상태 더미, 가구특징변수로 18세미만 가구원수, 주거상태 더미, 경상소득, 순금융자산, 그리고 가구주 국민연금 가입여부 등이 사용되었다.

나. 추정결과

<표 9>는 선택편의모형의 2단계 가계저축함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우선 가계저축함수의 조정결정계수를 살펴보면 0.9486, 0.8960, 0.9487로 모형이 가계저축에 대한 설명력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결합설명력을 검정한 F-test결과 1% 유의수준에서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의 설명력을 검토해 보면 2001년의 경우 18세 미만 가구원수가 음의 부호를 갖고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경상소득은 양의 부호를 갖고 유의하게 나타났다. 2002년의 경우 18세 미만 가구원 수

는 음의 부호를 갖고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경상소득과 국민연금가입여부는 양의 부호를 갖고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가소유여부는 양의 부호를 갖고 유의하였지만, 유의수준이 10%로 아주 낮았다. 2003년의 경우 경상소득이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가졌으며, 가구주 연령자승과 자가소유여부는 유의하였지만, 유의수준이 10%로 아주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저축하는 가구의 저축액은 경상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18세 미만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자가소유여부, 국민연금가입여부 등은 연도별로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편 <표 9>의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2002년의 경우 lambda의 값이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의 경우 10%로 유의수준이 낮지만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lambda는 선택편의가 가계의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본 추정의 결과는 선택편의가 가계저축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저축을 하면서 가계저축액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9> 선택편의모형 2단계 가계저축함수 추정결과

	2001년	2002년	2003년
상수항	-490.59364 (433.1780)	-1838.89074 ** (849.73613)	-3183.01919 ** (1630.63360)
가구주 연령	2.48704 (8.98102)	32.52677 (20.25835)	65.64494 (40.19655)
가구주 연령자승	-0.02457 (0.08451)	-0.30538 (0.18616)	-0.65795 * (0.38935)
가구주성별(1=남성)	-18.39559 (35.96731)	-45.59143 (84.02399)	-37.32606 (134.70976)
가구주 교육년수	-1.81337 (3.60240)	3.71962 (5.78422)	7.73378 (9.73265)
배우자 유무	20.53192 (40.42903)	91.51657 (83.37441)	79.66010 (124.66125)
18세 미만 가구원 수	-35.08159 ** (16.84179)	-65.86071 ** (28.59205)	-8.97687 (34.16969)
주거상태 (1=자가)	71.04184 (47.09709)	111.97999 * (58.14091)	220.01191 * (116.30291)
경상소득	0.98423 *** (0.04062)	1.02149 *** (0.13808)	1.16229 *** (0.19161)
순금융자산	0.00014 (0.00155)	0.00283 (0.00252)	0.00023 (0.00179)
국민연금가입여부	25.84814 (25.58629)	128.48489 ** (63.00253)	128.17377 (86.52400)
lambda	329.10647 * (172.22233)	737.66708 *** (265.57866)	1028.83254 *** (440.69511)
R-square	0.9486	0.8960	0.9487
F-test	1856.44 ***	775.78 ***	1380.77 **

주: ( )는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Ⅳ. 가계의 저축목적 변화 분석

2001~2003년 기간 중 저축가구수, 저축액수 등이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의 저축목적 역시 변화하였다. 이에 제 Ⅳ장에서는 가구를 저축목적 변화에 따라 '노후대비→노후대비', '노후대비→기타', '기타→노후대비', '기타→기타' 등 네 가지로 구분 한 후, 각각의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다. 저축목적 변화에 따른 가구주 및 가구특성은 <부표 1>에 소개하였다.

<표 10>은 저축목적 변화에 관한 이항선택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2열과 3열은 2001년을 기준으로 노후대비 목적 저축가구를 추출한 후, 2003년에는 저축목적이 노후대비 이외의 목적으로 변화한 가구에 1의 값을 2003년에도 저축목적이 노후대비인 가구에는 0의 값을 부여한 후 이항프로빗분석을 실시한 추정결과이다. 그리고 4열과 5열은 2001년에 노후대비 이외의 목적으로 저축을 하던 가구를 추출한 후, 2003년에는 저축목적이 노후대비로 변화한 가구에 1의 값을, 2003년에도 저축목적이 노후대비 이외의 목적인 가구에는 0의 값을 부여한 후 이항프로빗분석을 실시한 추정결과이다. 설명변수로는 2001년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이 사용되었다.

우선 2열과 3열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은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연령 자승은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저축목적이 노후대비에서 기타로 바뀔 가능성이 점증적으로 커짐(increase with increasing rate)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제 Ⅲ장의 분석에서 가구주연령이 증가할수록 노후대비 저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점감적으로 커진다(increase with decreasing rate)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구주 교육연수와 자가소유여부, 월평균생활비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가를 소유하였을수록, 월평균생활비가 높을수록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4열과 5열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은 유의한 양의 값을 가구주연령 자승은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저축목적이 기타에서 노후대비로 바뀔 가능성이 점증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정 연령가지는 저축목적을 기타에서 노후대비로 바꿀 가능성이 커지다가, 일정연령이 지나면서 저축목적을 기타에서 노후대비로 바꿀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게 된다. 자가소유여부, 임금근로자 더미, 월평균 경상소득 등은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가를 소유하였을수록,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일수록, 월평균경상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저축목적을 기타에서 노후대비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번의 추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여부는 각각 유의한 음의 값과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이 10%로 낮아서 강한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표 10> 저축목적 변화에 관한 이항선택모형 추정결과 1.

	1 = 노후대비→기타 0 = 노후대비→노후대비		1 = 기타→노후대비 0 = 기타 → 기타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상수항	2.44156	0.74741 ***	-3.36729	0.66870 ***
가구주연령	-0.06267	0.02755 **	0.08557	0.02567 ***
가구주연령 자승	0.00065	0.00026 **	-0.00090	0.00025 ***
가구주성별(1=남성)	0.01568	0.17791	0.02821	0.15427
가구주 교육년수	-0.02192	0.01068 **	0.00623	0.01137
배우자유무(1=유)	0.01565	0.15835	0.16116	0.13633
18세 미만 가구원 수	0.00009	0.04964	-0.02875	0.04521
주거상태(1=자가)	-0.29259	0.08505 ***	0.25309	0.07976 ***
경제활동상태(1=임금근로자)	-0.17788	0.11907	0.31027	0.11345 ***
경제활동상태(1=비임금근로자)	-0.10776	0.11699	0.16085	0.11626
월평균 경상소득	-0.00009	0.00012	0.00078	0.00026 ***
월평균생활비	-0.00134	0.00050 ***	0.00067	0.00051
순금융자산	0.00000	0.00001	0.00001	0.00000
국민연금가입여부(1=가입)	-0.16131	0.08762 *	0.14622	0.08458 *
Log-Likelihood	-856.41		-810.33	

주: ( )는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 11>은 저축목적 변화에 관한 이항선택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표 10>과 마찬가지로 2열과 3열은 2001년 기준 노후대비 목적 저축가구가 분석표본으로 사용되었고, 4열과 5열은 2001년 기준 노후대비 이외의 목적으로 저축을 하던 가구가 분석표본으로 사용되었다. 설명변수로는 주요 변수의 2001~2003년 기간 동안의 변화가 사용되었다. 저축목적 변화에 따른 집단 별 주요 변수의 2001~2003년 기간 동안의 변화는 <부표 2>에 소개하였다.

제 2열과 3열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과 가구주 연령자승, 가구주 교육연수는 <표 10>과 동일한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가구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저축목적이 노후대비에서 기타로 바뀔 가능성이 점증적으로 커지고, 가구주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저축목적이 노후대비에서 기타로 바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가구의 저축목적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거상태의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상태 변화 더미 중 자가→자가아님 더미변수와 자가아님→자가아님 더미변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상태가 자가가 아닌 상태로 변화하거나, 초기부터 자가가 아닌 경우 저축목적을 노후대비에서 기타로 바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 변화와 관련된 더미변수 중 미취업→취업 더미와 주거상태변화 중 자가아님→자가더미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수준이 아주 낮은 수준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4열과 5열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표 10>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구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저축목적이 기타에서 노후대비로 바뀔 가능성이 점감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연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져, 교육연수가 높아질수록 기타에서 노후대비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변화 더미 중 미취업→미취업 더미는 유의한 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의 미취업 상태가 지속될 경우 노후대비 저축을 하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거상태 변화 더미 중에서는 자가아님→자가 더미와 자가아님→자가아님 더미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가지 변수 중 자가아님→자가아님 더미가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은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노후대비 보다는 주택마련 등을 위한 저축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저축목적을 노후대비로 바꿀 가능성이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자가아님→자가더미가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은 해석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소득의 상당부분을 자가 마련에 사용하면서 본격적인 노후대비 저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다. 주거상태의 변화와 저축목적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1> 저축목적 변화에 관한 이항선택모형 추정결과 2.

	1 = 노후대비→기타 0 = 노후대비→노후대비		1 = 기타→노후대비 0 = 기타 → 기타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상수항	1.95017	0.73591 ***	-2.54077	0.71260 ***
가구주연령	-0.07714	0.02688 ***	0.08917	0.02613 ***
가구주연령 자승	0.00084	0.00026 ***	-0.00092	0.00026 ***
가구주성별(1=남성)	0.05621	0.18865	-0.03496	0.16469
가구주교육년수	-0.03365	0.00995 ***	0.02249	0.01081 **
배우자유무의 변화(유→무)	0.21915	0.30811	-0.28181	0.24929
배우자유무의 변화(무→유)	-0.32753	0.45779	-0.04724	0.33208
배우자유무의 변화(무→무)	0.11057	0.16730	-0.24011	0.14626
경제활동상태 변화 (취업→미취업)	0.04849	0.16214	-0.00489	0.14007
경제활동상태 변화 (미취업→취업)	0.32360	0.19506 *	0.04366	0.15558
경제활동상태 변화 (미취업→미취업)	0.13096	0.12573	-0.53284	0.12948 ***
18세 미만 가구원수의 변화	0.03324	0.08276	0.01363	0.07472
주거상태의 변화 (자가→자가아님)	0.48854	0.17041 ***	-0.20336	0.17558
주거상태의 변화 (자가아님→자가)	0.28011	0.14774 *	-0.30654	0.12965 **
주거상태의 변화 (자가아님→자가아님)	0.38892	0.09574 ***	-0.32620	0.08692 ***
경상소득의 변화	0.00001	0.00011	0.00012	0.00017
월평균생활비의 변화	-0.00001	0.00050	-0.00042	0.00045
순금융자산의 변화	0.00000	0.00000	0.00000	0.00000
Log-Likelihood	-858.25		-817.18	

주: ( )는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Ⅴ. 요약 및 정책시사점

가계의 저축은 공적연금제도와 함께 중요한 노후 소득보장 수단이다. 그런데 실제로 가계의 저축이 노후대비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가구의 저축이 노후소득 보장방안으로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저축하는 가계의 저축행위 및 노후대비라는 저축목적이 가계의 저축에 미치

는 영향, 가계의 저축 목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가구의 저축이 노후대비 수단으로 작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구의 저축목적을 살펴본 결과 노후대비는 가계의 중요한 저축목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수주의 감소, 부채증가 등을 위해 저축을 감소시킬 경우, 가계는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가구 소득이라고 할 때, 이 결과는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하는 가구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우선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연령이 일정정도 이상 높아질 경우에는 오히려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문조·전귀연(2004)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은퇴에 대한 기존 연구가 주로 40대 이후를 대상으로 했던 것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가계저축목적 및 가계저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가구주의 교육수준, 경상소득, 자가 소유 여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저축액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목적의 변화에 관한 이항프로빗분석 결과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연수가 낮을수록, 자가 소유 가구가 아닐수록, 혹은 자가소유상태가 자가→자가아님 혹은 자가아님→자가아님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그리고 월평균생활비가 작을수록 저축목적을 노후대비에서 노후대비 이외의 것으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가구주가 취업상태일수록, 주거상태가 그리고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저축목적을 노후대비 이외의 것에서 노후대비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가구주의 미취업상태가 지속되거나, 주거상태가 자가아님→자가 혹은 자가아님→자가아님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저축목적을 노후대비 이외의 것에서 노후대비로 변경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가구주의 높은 교육수준, 가구주의 취업상태, 가계소득과 주거상태의 안정성 등이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노동시장이 안정되어 가구주의 고용상태가 안정이 되고, 이에 따라 가계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가계가 노후대비를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주거상태가 개선될 경우 역시 가계의 노후대비를 위한 노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노후대비를 위한 사적인 노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정책, 가구 소득 증대 정책, 주택정책 등이 동시에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변화에 따라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변화함을 고려하여 노후대비 저축 활성화 정책의 목표 집단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후대비 저축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적절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지 못한 노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미래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Ando, A. and F. Modigliani,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53, 1963

Barro, R. J.,"Are Government Bonds Net Wealth," *Journal ofPolitical Economy*, 82, 1974

Becker, G.S. and N. Tomes, "Child Endowments an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 1976

Bernheim, B.D., A. Shieifer, and L. Summers, "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 1985

Burtler, J.S. and R. Moffitt, "A Computationally Efficient Quadrature Procedure for the One-Factor Multinomial Probit Model," *Econometrica*, Vol. 50, No. 3. 1982

Greene, W. *LIMDEP, Version 7.0: User's Manual.* Bellport, NY: Econometric Software, 1995

Greene, W. *Econometric Analysis*, 4th ed. Prentice-Hall, Inc. 2000.

Hayashi, F., "Why is Japan's Saving Rae So Apparently High?", *NBER Macroeconomics Annual 1986*, 3d. by Stanley Ficher, MIT Press, 1986

Heckman, J., "The Common Structure of Statistical Model of Truncation, Sample Selection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and a Simple Estimator for Such Models."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4 (5) September, 1976

Heckman, J.,"Sample Selecti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 1979

Horioka, C. Y., "The Applicability of the 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 to Japan," *The Kyoto University Economic Review,* vol. 54, 1984.

Kotlikoff L.J. and A. Spivak, "The Family as an Imcomplete Annuities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 1981

Modigliani, F., "Fluctuation in the Saving -Income Ratio: A Problem in Economic forecasting," *Studies in Income and Wealth* 11, 1949

Modigliani, F., " Life Cycle, Individual Thrift, and the Wealth of N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76, 1989

김순미, 「재무계획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10호, 1998.

배문조·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7호, 2004.

성지미·이윤정,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2호, 2001

신종욱·이정호, 「노후재정의 핵심과 3층 노후보장체계의 역할」, 『사회보장연구』, 제20권 2호, 2004
안종범·전승훈, 「은퇴자 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 『한국경제연구』, 제15권, 2005.
양세정·성영애, 「노인가계의 경제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1호, 2001
이희숙, 「일하는 기간동안의 가계저축행태와 은퇴 후 가계소비행태와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6권 1호, 한국소비자학회, 1995
임경자,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정지만, 「저축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저축증대 방안」, 『사회과학연구』, 제17호,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2 pp1~26

<부표 1> 저축목적 변화에 따른 가구주 및 가구 특성 비교(2001년 기준)

	노후대비→노후대비	노후대비→기타	기타→노후대비	기타→기타
가구수	576	752	410	1093
가구주 연령	48.84	52.26	47.47	51.42
가구주 성별(1= 남성)	0.9201	0.8590	0.9098	0.8042
가구주 교육년수	11.44	9.89	10.85	9.32
배우자 유무(1= 유)	0.8906	0.8205	0.8683	0.7466
경활상태(1=임금근로자)	0.5365	0.4295	0.5610	0.4099
경활상태(1=비임금근로자)	0.3333	0.3311	0.3024	0.2827
경활상태(1=실업자)	0.0035	0.0106	0.0097	0.0320
경활상태(1=비경활)	0.1267	0.2287	0.1268	0.2754
가구원 수	3.78	3.51	3.92	3.49
18세 미만 가구원 수	0.91	0.73	1.07	0.87
주거상태(1=자가)	0.7778	0.6888	0.6390	0.5453
경상소득	277.51	213.93	239.99	164.93
순자산	672.09	395.89	-407.50	-677.32
총저축	111.50	85.93	85.65	50.21
적금 납입액	0.70	0.55	0.66	0.46
개인연금 납입액	31.37	21.26	25.82	15.82
저축성보험 납입액	5.78	2.78	3.30	1.56
보장성보험 납입액	15.32	9.35	13.36	7.33
계 납입액	5.71	3.17	3.55	2.23
국민연금가입여부	3.32	1.29	2.14	1.63

<부표 2> 저축목적 변화에 다른 가계특징의 변화

	노후대비→노후대비	노후대비→기타	기타→노후대비	기타→기타
배우자 유무의 변화(유→유)	0.8802	0.7992	0.8512	0.7155
배우자 유무의 변화(유→무)	0.0104	0.0213	0.0171	0.0311
배우자 유무의 변화(무→유)	0.0069	0.0053	0.0122	0.0110
배우자 유무의 변화(무→무)	0.1024	0.1742	0.1195	0.2425
경제활동상태 변화(취업→취업)	0.8194	0.7008	0.7878	0.6221
경제활동상태 변화(취업→미취업)	0.0503	0.0598	0.0756	0.0704
경제활동상태 변화(미취업→취업)	0.0260	0.0465	0.0610	0.0494
경제활동상태 변화(미취업→미취업)	0.1042	0.1928	0.0756	0.2580
가구원수의 변화	-0.20	-0.17	-0.16	-0.17
18세 미만 가구원수의 변화	-0.10	-0.07	-0.15	-0.11
주거상태변화(자가→자가)	0.7413	0.6263	0.5976	0.4941
주거상태변화(자가→자가아님)	0.0365	0.0625	0.0415	0.0512
주거상태변화(자가아님→자가)	0.0625	0.0691	0.0878	0.0979
주거상태변화(자가아님→자가아님)	0.1597	0.2420	0.2732	0.3568
경상소득의 변화	15.35	0.91	24.80	11.97
월평균생활비의 변화	21.94	17.66	13.02	13.01
총저축의 변화	-6.59	-16.76	11.78	-1.039
적금 납입금의 변화	-1.51	-0.62	-1.16	-1.49
개인연금 납입금의 변화	-0.37	-0.87	0.40	-0.64
저축성보험 납입금의 변화	3.49	1.79	2.68	1.54
보장성보험 납입금의 변화	-2.35	-1.65	-1.06	-1.57
계 납입금의 변화	-0.56	-0.47	0.11	-0.10
순금융자산의 변화	-1236.75	-658.74	-582.18	-518.54